

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
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화영 의원 발의】



2021. 3. 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16호로 2021년 2월 17일 김화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,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제2항)
- 나.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
(안 제9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1. 2. 10. ~ 2. 16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5조제2항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,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
 - 안 제9조의2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.

-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(민식이법)이 지난해 3월 시행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,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

도로교통법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1.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
2.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
3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4. 그 밖에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